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행정자치위원회 이숙자 의원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초2 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이숙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4조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및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시 지방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서는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절차(제14조제3항) 규정이 없고, 중·장기 행정계획 통보(제14조제4항)에 대한 절차도 일부 미비하여 법령과 조례 간 정합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통보 시점을 소관

위원회의 유무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 절차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 절차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행정운영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안 및 행정계획 통보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검토 및 시장의 반영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를 제·개정할 때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 이전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소관 위원회 유무에 따라 통보 시점이 달라 절차적 일관성이 부족하여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으로 통일하여 명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가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지 않아도 중·장기 행정계획을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는 법에서 규정한 통보 의무의 취지와 행정 절차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가 검토 후 시장에게 통보하는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안 및 중·장기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검토 후 서면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원회의 기능으로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가 명시되지 않아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에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를 추가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제·개정 및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절차를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조례안 및 행정계획의 통보 절차를 구체화하고, 위원회의 검토 기한과 시장의 반영 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실효성 있는 행정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